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국 민 건 강 보 험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, 이 경우 이용량 및 재정 부담 증가 등을 평가하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* 현재 선별급여 평가척도 中 ‘사회적요구도’ 항목에서 기타 사회적 편익을 고려하여 평가 실시(「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)

3. 주요내용

가.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선별급여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(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, 제2항 제1호)

나. 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신설로 인해 현행 [별표 2]의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조정(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90)이 하향 조정되지 않도록 예외 규정 마련하여 개정안에 따른 조문을 정비(안 별표2 제5호의2)

※ (안)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「선별급여의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 고시에 95%로 규정 예정

*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【별표2】 제4호에 따라 선별급여 항목은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부담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4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

제18조의4제2항제1호 중 “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”를 “그 평가주기를”로 한다.

별표 2 제5의2호 각목 외의 부분 중 “제4호에도 불구하고”를 “제4호(제18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)에도 불구하고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의4(선별급여) ①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(이하 “선별급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3. (생략) 4. <신설>	제18조의4(선별급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~3. (현행과 같음) 4. <u>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</u>
② 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른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(이하 “적합성평가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평가주기: 선별급여를 실시한 날부터 5년마다 평가할 것. 다만,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선별급여의 내용·성격 또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<u>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 2.~3. (생략)	②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.</u> 2.~3..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	
연락처	(044) 202 - 2708